

함 평 월 야 공 공 지 원 민 간 임 대 주 택
공 급 촉 진 지 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1. 05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정부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장기적인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정책)』(2015.01.13),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2017.11.29)을 발표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2018.07.17)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중
- 빛그린산업단지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 산업단지 동일 생활권역 내 직주근접형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종사자의 주거안정 실현 및 빛그린산업단지의 활성화 도모
 - 『2025 함평군 기본계획』의 빛그린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조성 반영
- 함평군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
 - 함평군 제안 후보지(2019.09)로 지자체와의 우호적 협력관계 유지 및 신규후보지 확보를 위하여 지역 발전지원 협약 체결(LH↔함평군, 2019.11)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 필요
 - 빛그린산업단지와 연접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난개발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1.2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함평월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 면 적 : 104,636㎡
- 세 대 수 : 1,400 세대
- 용 도 지 역 : 생산녹지지역
- 기 간 : 2021 ~ 2026년
- 사 업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협의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부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2항의 [별표2](가.도시의 개발 - 16)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3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내 용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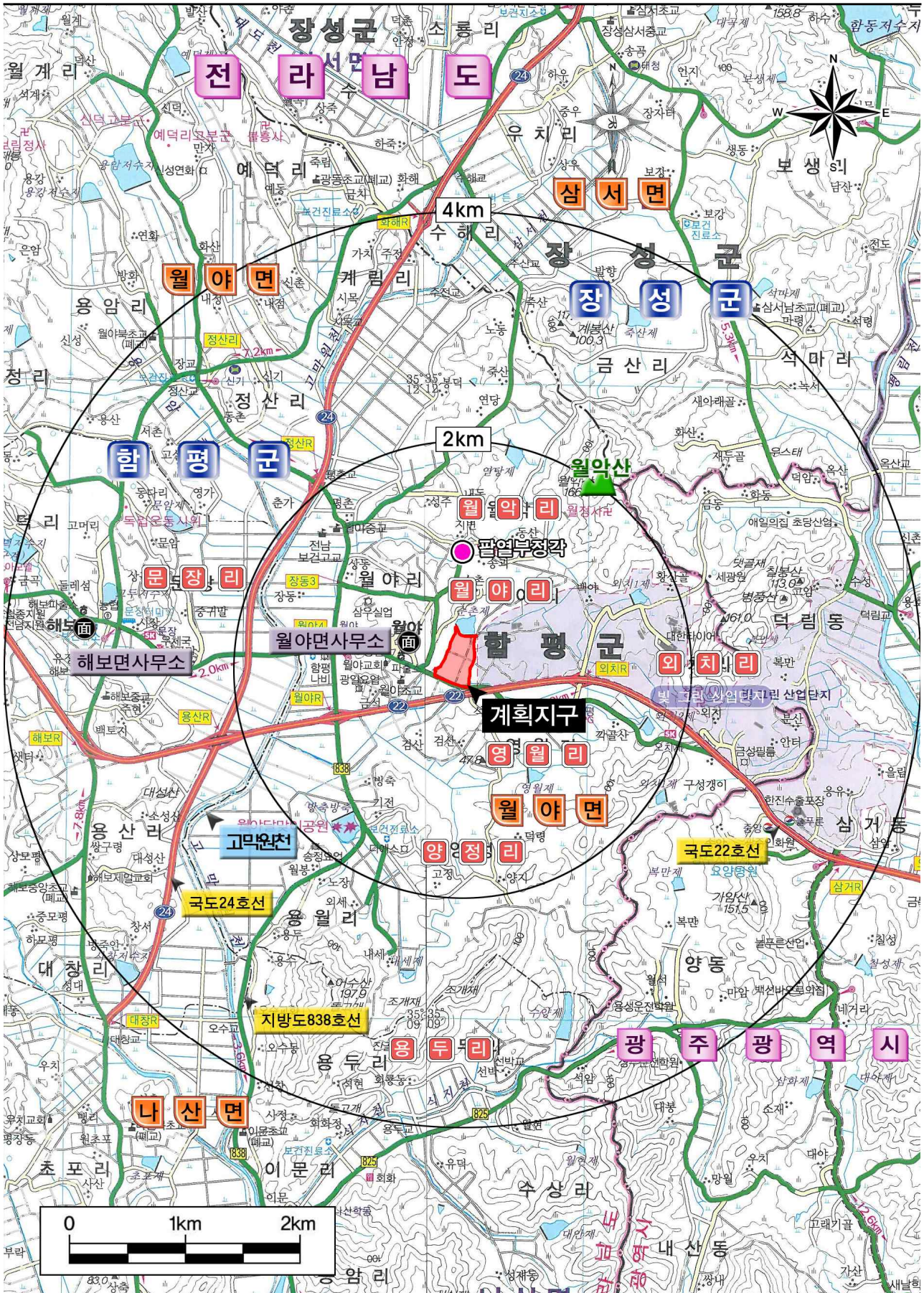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1.4 계획의 추진경위

- 2019. 11 :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등 함평군·NH 지역발전지원 기본협약 체결(NH↔함평군)
- 2020. 11 : 후보지 선정
- 2021. 04 : 평가준비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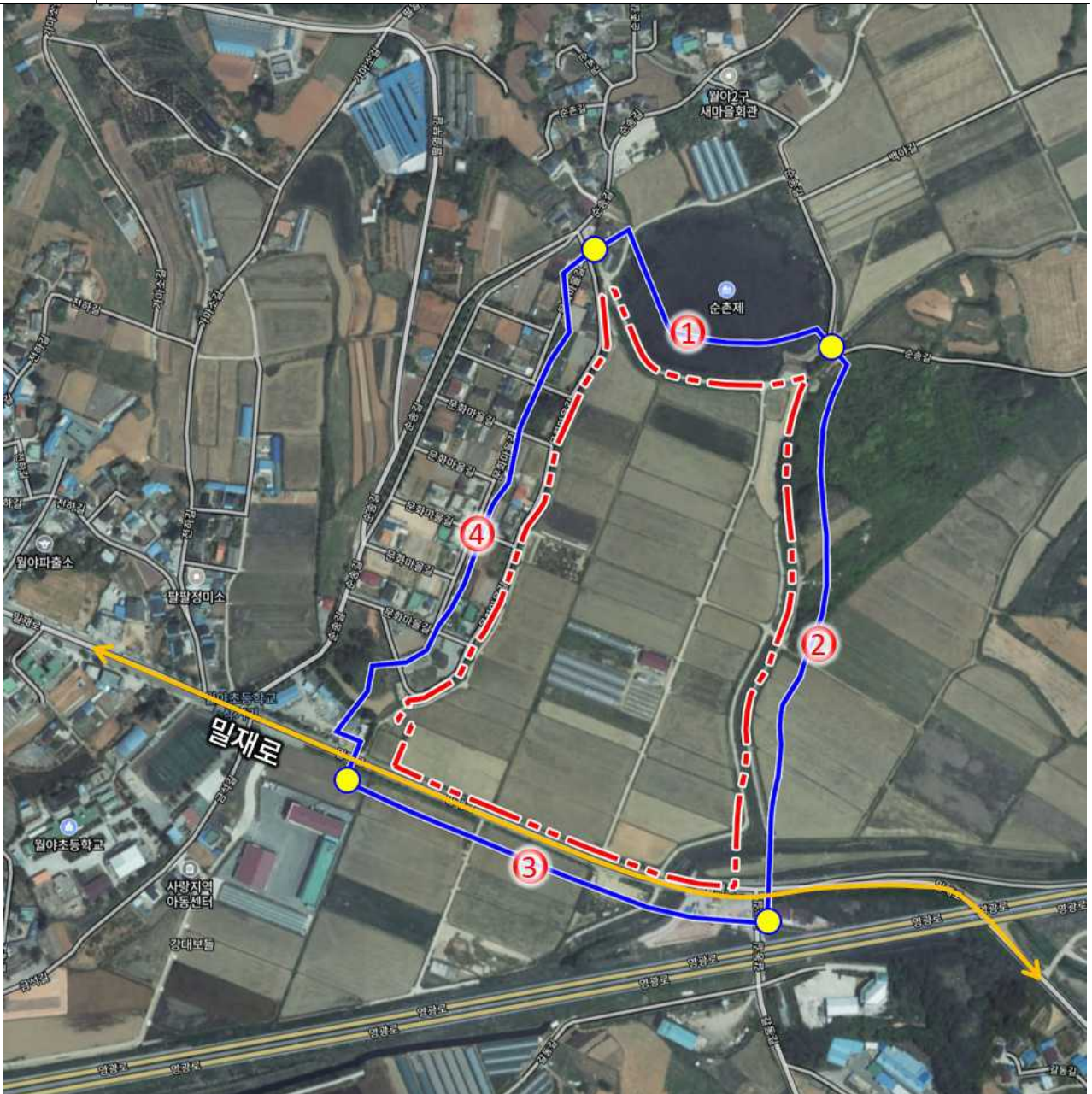
1.5 향후계획

- 2021. 0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21. 07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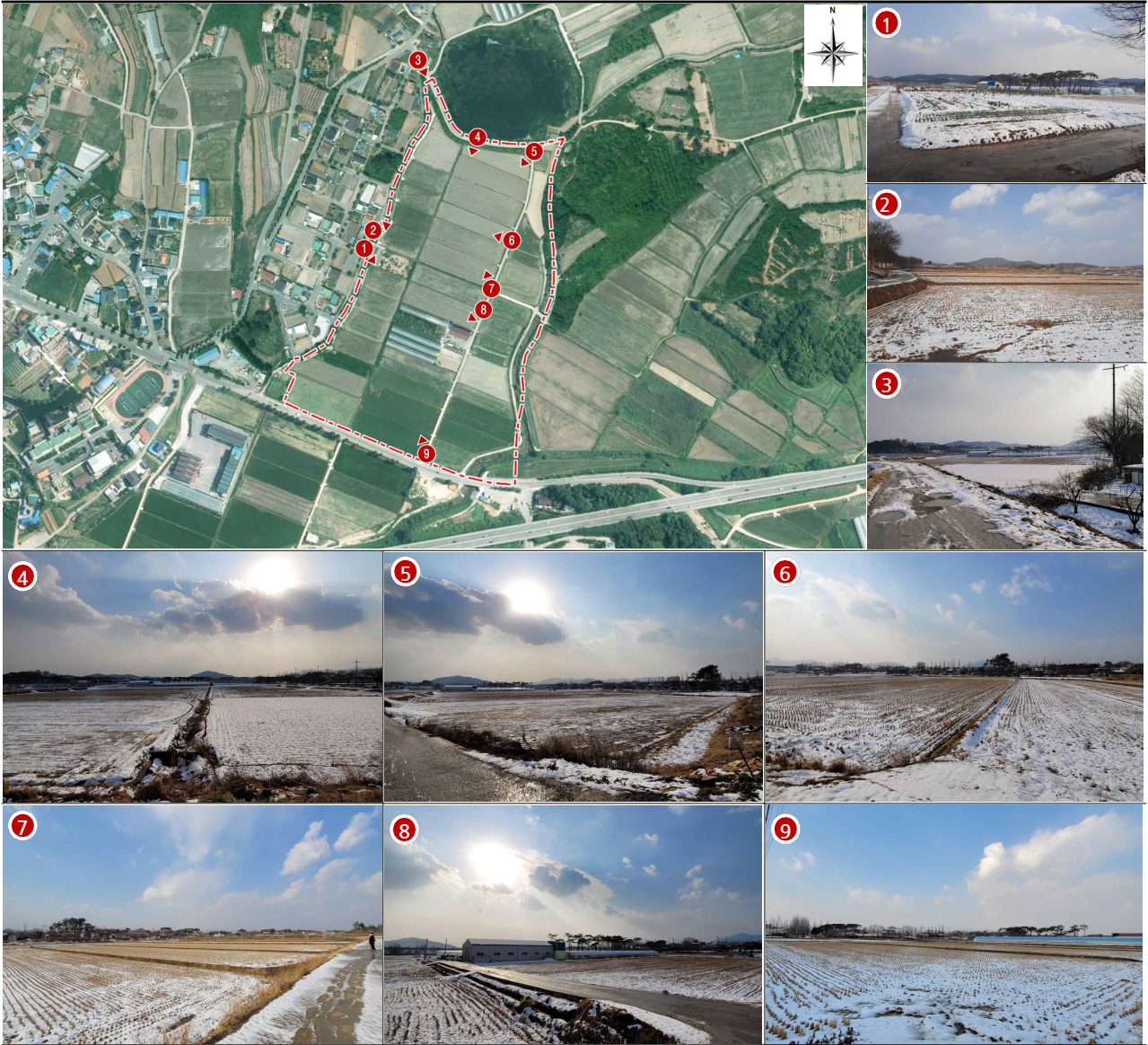


[그림 1] 계획지구 위치도

구분	지구계 결정사유
①	저수지(순춘제) 경계
②	산업단지(빛그린산업단지) 경계
③	(구)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도로 미포함)
④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우수중계펌프장) 경계



[그림 2] 계획지구 지구계 결정 사유도



[그림 3] 계획지구 내·외부 현황(위성사진)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 거 법 령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계 획 수 립 기 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9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 의 방 법 : 서면심의
- 심 의 기 간 : 2021. 04. 26 ~ 2021. 05. 10
- 결 정 사 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이 하 생 략 -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대상지역 설정

- 본 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등을 근거로 하여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범위 설정 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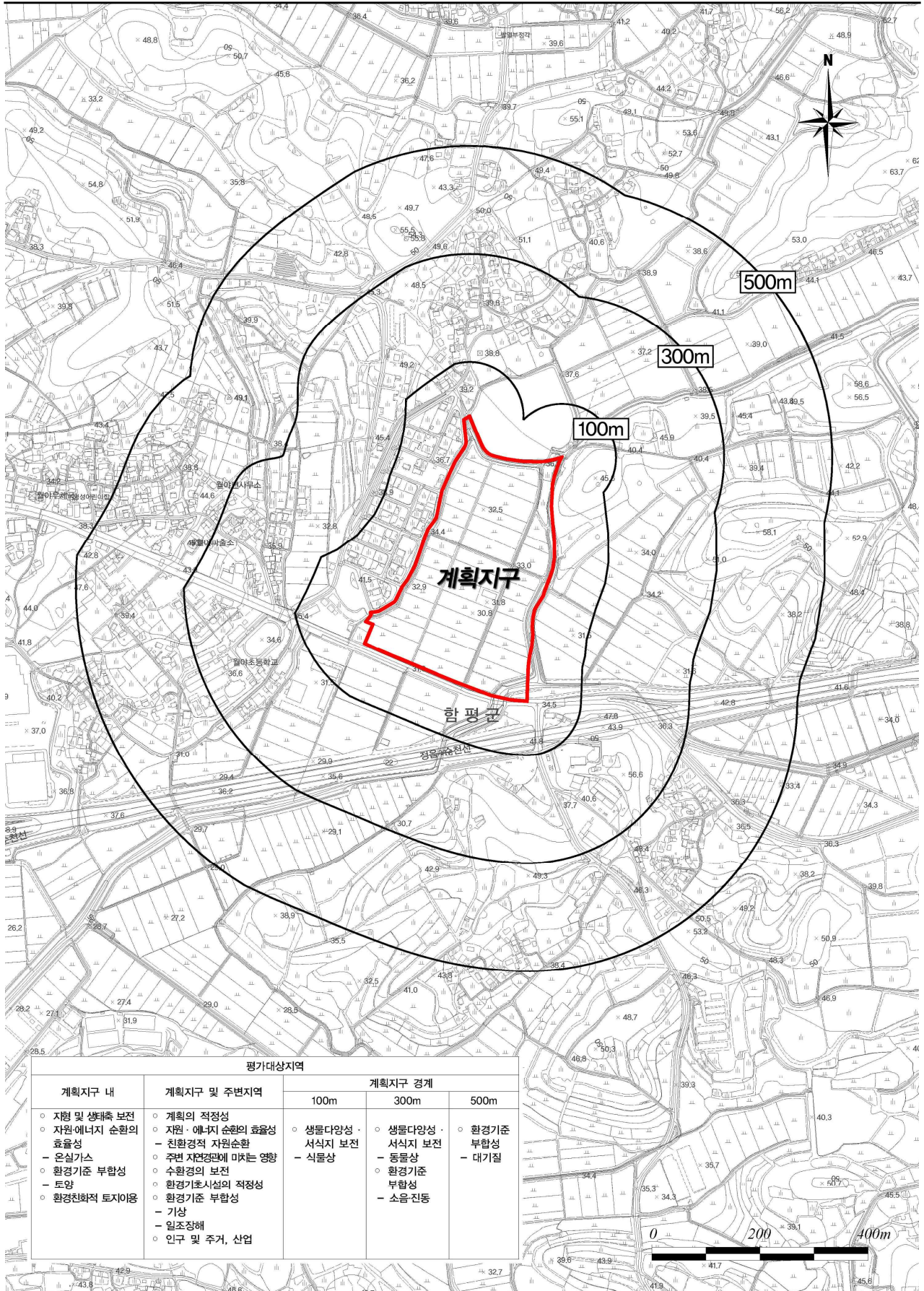
〈표 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 생활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주변 순존제, 금석천 일대 수계생물상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동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 및 경사 분석에 따른 입지 검토 지역 • 절·성토로 인한 지형의 변화 •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변화 예상 지역 •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등 경관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및 저감방안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 인원으로 인한 오수 유입 가능 수계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수질오염 총량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 (금석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계획 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이 위치함 •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표 2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입 지 의 타 당 성	생활 환경 의 안전 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소 음 · 진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계획지구 경계로 부터 300m 이내의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과 기존 소음 발생 시설인 국도 22호선 등이 위치 운영시 사업지구 내 신축공공주택에서의 도로교통 소음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일 조 장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 장애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시행으로 인한 건설장비 투입 및 토지이용변화,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사회 · 경제 환경 과의 조화 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계획 수립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인구 및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산업시설 현황과 유입 예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자료) 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2020.12, 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그림 4]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2.2.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및 설정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개발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에 따른 대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본 계획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계획을 수립할 경우(Action)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대한 “계획비교” 측면에서의 대안,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대안,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 측면에서의 대안을 설정하여 각 대안별 비교·평가를 제시하였음

〈표 3〉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기준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action)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계획수립 여부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토지이용 구상안 비교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대상지역, 지구계 비교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나. 대안의 비교·검토

1)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 계획 수립(Action) 및 미수립(No Action)시 대안별 환경적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4>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구 분	계획 수립(Action)	계획 미수립(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입되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거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환경 조성 •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지구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공원·녹지로 확보 • 동측에 위치한 빛그린산업단지 계획과 연계하여 직주근접의 주거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역의 수요로 인해 장·단기적으로 개별적인 개발이 예상 • 빛그린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시설 부족
각종 보호지역 영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과 관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보호지역은 없으며, 녹지공원 등이 조성되어 소형생물의 서식환경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는 농경지(전, 답)이 대부분으로 현 상태를 유지
지형 훼손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탄지에 위치하여 지형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토공계획을 최소화 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는 대부분 전, 답으로 낮은 구릉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바,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나 적정 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환경 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미미한 생활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으로 환경기준 유지 및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표 4 계속〉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구 분	계획 수립(Action)	계획 미수립(No Action)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며, 환경친화경적인 개발이 가능한 공주택지구로 지정 • 계획지구와 인접한 주민들이 공원 및 근린 생활시설 이용 가능 • 계획지구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한 직주근 접으로 산업 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비산먼지, 소음 등의 영향이 예상되어 계획지구와 인접한 주민들의 민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속성 등 토지이용 효율 저하
	○	-
선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이 조성됨으로서 국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토지이용 효율을 증대시키는 등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2)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검토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5>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비교·분석

구분	대안1	대안2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마을과 공원을 연결하고, 근생시설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마을주민의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근생시설을 도로변에 계획하여 외부 유입인구에 대한 수요도 고려한 토지이용 구상안
토지이용계획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와 문화마을 사이에 근린생활시설과 공원녹지를 입지시켜 지역주민 모두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모든 공간에 접근 가능하도록 동선을 효율적으로 배치 주거용지 1개 블록은 대규모 블록으로 구획하여 유연한 건축배치와 동간 구성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측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주변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 수행 가능 남동측 공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형으로 배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마을과 연결되는 도로폭원 협소 북측공원에 비해 남동측 공원은 저류지와 중복 결정되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대안2보다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두개 블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공원으로의 접근이 불편 대안1에 비해 공원녹지 비율이 낮음 (대안1: 19.5%, 대안2: 17.4%)
선정(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역주민이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 등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공원녹지를 양쪽으로 분산시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대안1을 선정함 	

3) 입지에 따른 비교·검토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지구 경계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입지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6〉 지구계 입지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대안1	대안2
①	저수지(순춘제) 경계	저수지(순춘제) 경계
②	산업단지(빛그린산업단지) 경계	산업단지(빛그린산업단지) 경계
③	(구)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도로 미포함)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
④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오수중계펌프장) 경계	지적 경계
⑤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월야문화 마을을 포함한 경계
지구계		
규모	104,636㎡	215,446㎡

〈표 6 계속〉 지구계 입지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대안1	대안2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22호선이 위치하여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타지역으로의 접근이 우수한 지역이며, 남측 경계 도로(밀재로) 확장에 따른 교통 여건 개선 가능성이 있음 • 계획지구 주변으로 빛그린산업단지, 월야문화마을이 입지하여 조화로운 연계개발이 가능 • 적정규모의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및 주변지역 훼손 최소화가 가능하며 지장물이 없어 개발이 보다 수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서측에 위치한 기존 마을과 남측에 위치한 전·답을 추가로 편입하여 대안 1과 비교시 충분한 주거용지 확보 가능 • 기존 주민 거주지역이 포함되어 공사시 민원 발생 최소화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기존 주민들의 소음 및 먼지 등의 민원 발생 • 주거용지 확보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공원·녹지공간 확보가 작아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부지를 포함할 경우 밀재로 도로 확장 계획에 따른 주거단지 간에 단절 발생 • 구역계 비정형화에 의한 비효율적 토지이용 발생 • 계획지구 대부분이 사유지로 토지보상 문제발생 • 국도22호선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소음의 영향으로 입주민 민원 발생
선정(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국도 22호선을 통한 도시간의 광역교통여건이 우수하며, 계획지구 주변 빛그린산업단지 및 월야문화마을과의 조화로운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안1을 선정함 	

2.2.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7〉 평가항목 설정 및 사유

평가항목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 여부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비교”, “입지” 및 “수요·공급” 등의 대안설정 및 분석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 생태자연도1등급, 식생보전II등급이상 지역 훼손 여부 •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 파악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조성, 절·성토 등 계획수립시 지형변화 예상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필요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점·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필요 •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영향 여부 • 내부 수계(금석천 등)의 수리·수문 현황 및 치수 안정성 부합여부 검토 필요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변화 예상, 기초자료 활용 	
입지의 타당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사와 연료 사용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필요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과의 부합 여부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운영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영향 • 소음환경기준 등과의 부합성
		일조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에 따른 일조권 변화 예상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오수, 폐기물 등 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처리 여부 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 필요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연료사용, 에너지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영향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주택단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파악 및 편입 토지 보상대책 수립
		인구·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예상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에 따른 산업활동 변화 예상

나. 평가범위 및 방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토대로 선정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표 8〉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자 연 환 경 의 보 전	① 조사내용 • 식물상 현황 - 식물 분포 및 식생, 습지분포 등 • 동물상 현황 - 분류군별 종 분포 및 서식현황 • 육수생물상 현황 - 인접 하천의 분류군별 종 분포 및 서식 현황 • 특이할만한 종 분포 및 서식 현황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 범위 • 중점: 계획지구 및 주변하천 일대 • 광역: 계획지구 경계 3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계획지구 내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 이내(2회 조사)	• 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 발생 및 예측 • 동물상 - 분류군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 육수생물상 - 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종합적 예측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사면안정성 검토, 연약지반 검토 • 특이지형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검토 •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태축 및 산림축 단절여부 검토	• 계획지구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근경·중경·원경)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여부 및 경관 변화정도 예측 • 경관변화 최소화 대책 수립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표 8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자 환 경 의 보 전	수 환 경 의 보 전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수계에 대한 환경 기준 설정항목의 수질현황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 6개 지점(2회 조사) • 지하수 2개 지점(2회 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공사 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점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배출 부하량 예측	• 계획지구 및 관련 수계(금석천)
	생 환 경 의 안 정 성	기 상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인근 기상대) ③ 조사방법 •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국지적 기상특성 분석 - 기상연보 등 활용
대 기 질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원(면·선·점) 현황 파악 ② 조사 범위 • 직·간접 영향권: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7개 지점(2회 조사)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시 영향 예측 및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평가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토 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표토 3개 지점(2회조사)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여부파악 및 대책 수립	• 계획지구
소 음 · 진 동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5개 지점(2회조사)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영향예측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2.2.4 환경현황 조사계획

가. 조사항목

- 환경 현황 조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 할 계획이며, 문헌자료의 경우 국가환경DB(국가환경 측 정망 자료, 생태환경 조사 자료 등) 등을 활용할 계획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향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 측 정지점 및 동·식물상 조사계획을 수립함
- 환경질 및 동·식물상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문헌 자료 활용시 계획지구와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할 계획임

〈표 9〉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질 현황조사 계획

구 분	항 목	지 점	조사횟수	비 고
대기질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	7	2회	-
지표수질	유량, pH, BOD, SS, DO, TOC, T-P, 총대장균군, Cd, As, CN, Hg, 유기인, Pb, Cr ⁶⁺ , PCB, ABS	6	2회	-
지하수질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Hg, As, Cr ⁶⁺ , NH ₃ -N, NO ₃ -N, Cd, Al, 페놀, KMnO ₄ 소비량, 총경도, 맛, 냄새, Cu, 색도, pH, Zn,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	2	2회	-
토양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 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3	2회	-
소음·진동	소음 및 진동	5	2회	-

주) 환경질 조사계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 10〉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식물상 현장조사 계획

구분	조 사 항 목	조사범위	조사시기	비고
육상식물상	○식물구계 현황 ○식물상 및 특정식물(멸종위기 야생생물, 특정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등) ○식생분포, 식생보전등급 ○보호수, 노거수 및 법정보호종 분포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	○관련 규정에 의거 동·식물 의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시기에 현지조사 실시	2회 조사
육상동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류, 곤충류, 법정보호종 분포			
육수생물상	○어류, 자생 대형 무척추동물 분포, 환경 법정보호종 분포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등급별 분포현황			문헌자료

주) 생태계 조사 계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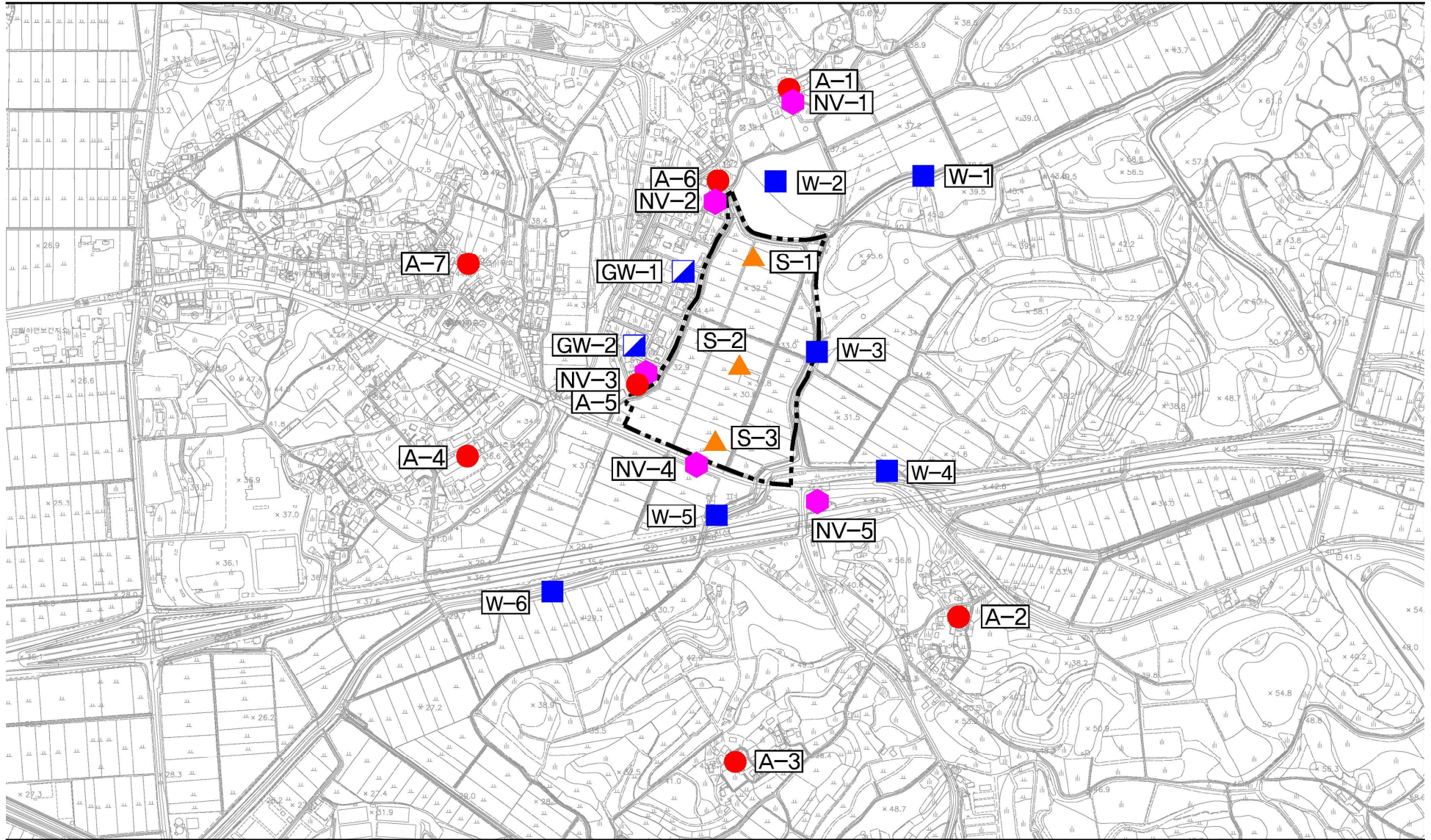
나. 조사지점

- 환경질 측정지점은 사업계획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계획지구의 주변 환경, 수계, 정온시설 등 영향 예상지역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질 조사지점

구 분	조사지점	비 고	
대기질	A-1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산316-1(월야2구 새마을회관)	-
	A-2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286(주거지역)	-
	A-3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420-1(주거지역)	-
	A-4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240(월야초등학교)	-
	A-5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마을길 6-13(문화마을경로당)	-
	A-6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마을길 45	-
	A-7	전남 함평군 월야면 전하길 65(월야면사무소)	-
지표수질	W-1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832-1	-
	W-2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339	-
	W-3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산9-7	-
	W-4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363-5(석보교 하류 약 30m 지점)	-
	W-5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363-5(석보교 하류 약 450m 지점)	-
	W-6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363-5(석보교 하류 약 900m 지점)	-
지하수질	GW-1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449	-
	GW-2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465	-
토양	S-1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346-1	계획지구 내
	S-2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347-1	
	S-3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347-9	
소음진동	NV-1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산316-1(월야2구 새마을회관)	일반
	NV-2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마을길 45	일반
	NV-3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마을길 6-13(문화마을경로당)	일반
	NV-4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347-10 남측 도로변	도로변(밀재로)
	NV-5	전남 함평군 월야면 갈동길 336(예찬교회)	도로변(밀재로)

주) 조사지점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림 5] 환경질 현황조사 지점도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국토교통부) 또는 평가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나. 주민등의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1)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표 1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내용

구 분	조사지점
공고내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가) 공고·공람 사실의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 공고·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고·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 ~ 4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주민열람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할 것임
-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및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2) 설명회 개최

-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의·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서 개최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3)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